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2398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23일

제 안 자: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7년 9월 27일 김태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2)과 2017년 11월 28일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8) 이상 2건을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2.23)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취약계층"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3항제5호).
-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항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 중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8. (생 략) | 1.~ 8.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9.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 |
| | 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
| |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
| | 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 |
| | <u>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u> |
| |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 |
| | 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
| | <u>말한다.</u> |
| <u>9</u> . ~ <u>14</u> . (생 략) | <u>10</u> . ~ <u>15</u> . (현행 제9호부터 제14 |
| | 호까지와 같음) |
|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 ③ (현행과 같음) |
| 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 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
| <u>예방·해소</u> |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 |
| | 해소에 관한 사항 |
| 6. ~ 14. (생 략) | 6. ~ 14.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 ·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 중| 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 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 인 ·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 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학계·언론계·기업계 ·민간단체·서울특별시의회 의 **워 ·** 공무워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3조(수당 등) -----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 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에 따라-----<삭제>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안전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